

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	2011. 12. 15	조례	제1195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	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8. 2. 26	조례	제1776호
일부개정	2020. 5. 15	조례	제2018호(민간위탁 관리 조례)
일부개정	2020. 12. 14	조례	제2086호
일부개정	2022. 8. 16	조례	제231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그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2. 26, 2022. 8. 16>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 8. 16>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소속 직원”이란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,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른 청원경찰, 「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」과 「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, 「지방자치법」에 의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말한다.
3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,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,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[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. 2. 26]

[전문개정 2018. 2. 26]

제2조(설치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6,

2022. 8. 16>

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어린이집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,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2. 26>

1. 용인시청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 556)
2. 처인구청 :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(김량장동 286)
3. 기흥구청 :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(구갈동 355)
4. 수지구청 :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(풍덕천동 720)

제4조 [제1조의2로 이동 2018. 2. 26]

제5조(업무)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
2.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
3.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
4.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

제6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14>

④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, 취소 등에 관한 심의는 직장 어린이 집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제7조(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, 학부모 대표,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의가 종료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 다만,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

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8. 2. 26>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1>

제8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6>

제9조(보육료 납부)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킬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6>

제10조(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별로 각각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 2. 26>

③ 위원은 해당 보육시설의 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, 어린이집 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18. 2. 26>

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2. 26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·하반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8. 2. 26>

1.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3. 영유아의 건강,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4.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5. 보육 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7.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8.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9.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삭제 <2018. 2. 26>

제13조(위원의 위·해촉)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6>

1.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
2. 학부모 대표는 자녀인 아동이 졸업·퇴소하게 된 경우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4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

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6>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 법령,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<개정 2018. 2. 26, 2020. 5. 15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용인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8. 2. 26 조례 제177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5. 15 조례 제2018호, 민간위탁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⑳ 까지 생략

㉑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「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㉒ 부터 ㉓ 까지 생략

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

부칙 <2020. 12. 14 조례 제208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칙 <2022. 8. 16 조례 제23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